

현금영수증제도의 이점 현금영수증으로 수익성 UP 세금 DOWN

200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해 보자. 정리 정술이 기자·사진 주현진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으로 5천 원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업소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현금 매출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허위 신고·탈세를 방지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탓인지 화려한 출발과 달리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특히 소규모 제과점과 같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급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보다 현금성이나 수익성이 훨씬 높아 현금영수증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수익성은 높이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 방법과 혜택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의 가입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별도의 부담 없이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은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신용카드 매출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연매출 4천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연 500만 원 한도), 매출액이 전년도의 1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가 현금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정규지출경비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사업자로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 미이행에 따르는 불이익

2005년 4월까지 총 6천164건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신고됐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달마다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1차 행정지도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탈세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우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간 매출 2천400만 원 이상인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매출이 누락되면 추후가산세 등을 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국민에게는 복지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현금 매출 증대로 수익성은 높이고 투명한 세금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해 보자.

mini info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손님들에게 알려주세요!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회원(소비자/사업자)으로 등록할 것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가 연말정산 시 공제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챙겨둘 것
- 회원 가입 전에 받은 영수증도 가입 후 확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 ‘소득공제용(소비자)’ 인지 ‘지출증빙용(사업자)’ 인지 미리 확인할 것
- 발급할 때 제시한 신상 정보는 일부만 영수증에 기재되고 국세청 내 폐쇄망에서만 조회되므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 www.taxsave.go.kr

Advice 정동현

〈정동현세무사사무소〉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 현재 부동산중개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와 치과정보지 〈덴포라인〉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

